

신용정보 활용체제

당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I.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1. 이용목적

- (1) 신용관리 등 내부경영관리
- (2) 해당 신용 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
- (3)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2. 신용정보의 종류

- (1)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정보
개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대표자 성명 등
- (2) 기타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정보

II.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
당사가 현재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는 없으며, 향후 제 3 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 예정

III.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

1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

- (1)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(법 제 33 조의 2) :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 정보를 법 제 33 조의 2 에 따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.
- (2)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(법 제 35 조) :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 년간의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사항을 회사를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함. 다만, 내부경영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- (3)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의 철회권 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본인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

- (4)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(법 제 38 조)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
- (5)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지 요청(법 제 38 조의 2)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
- (6)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(법 제 38 조의 3):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는 5 년,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는 3 개월이 경과 한 경우 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

2. 권리행사방법

- (1)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방문, 서면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
- (2) 상기 권리의 행사 신청 시 당사는 관련 내용에 관한 서면, 본인확인서류, 기타 관련 증빙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

IV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담당자

- 1. 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: 준법감시인 (직통번호를 통해 연결 : 02 - 704 - 0414)